

2018.06.04

'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'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안내

1. 개요

'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'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개정 사유

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3. 주요사항

가. 현지실사를 방해·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(안 제6조제2항)

-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
나.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 (안 제12조제2항)

-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

다.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(안 제38조제4항)

-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,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

2018.06.04

'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'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안내

4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(주소 : (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→ 법령. 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(전화 : 043-719-2162, 팩스 : 043-719-21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거부하거나”를 “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등록된 해외작업장”을 “해외작업장”으로 한다.

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국내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수출하려는 자의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모니터요원”을 각각 “정보수집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모니터링”을 “정보수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모니터요원”을 “정보수집요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<u>거부하거나</u>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| 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거부, 방해</u> <u>또는 기피하거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<u>등록된 해외작업장에</u>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| <p>제12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해외작업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8조(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38조(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국내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수출하려는 자의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</u></p> |

| | |
|--|---|
| <p>제39조(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<u>모니터요원</u>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<u>모니터요원</u>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<u>모니터링</u> 3. (생략) <p>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<u>모니터요원</u>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p> | <p><u>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9조(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) ① ----- ----- ----- <u>정보수집요원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정보수집요원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정보수집</u> 3. (현행과 같음) <p>③ ----- <u>정보수집요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|
|--|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입식품정책과 | |
| 연락처 | 043-719-2162 |